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42

발의연월일: 2020. 7. 14.

발 의 자: 박찬대·신동근·김홍걸

이동주・맹성규・강선우

김교흥 • 정일영 • 허종식

문정복・유동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유치원 및 초·중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는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에게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세월호참사 이후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이를 강화함으로써 안정화 단계에 있는 반면, 대학은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등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.

교육부가 2019년 5월 실시한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, 조사대상 344개교에서 해마다 5천여 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심화되는 추세임에도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설치된 대학은 조사대상 중 14%에 불과하고, 대학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갖추고 있는 대학도 15%에 지나지 않으며, 안전관리계

획을 수립하고 있는 대학도 58%로서 전반적으로 조직, 인력, 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곤란한 상황임.

이에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, 이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7조의 2 신설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안전관리)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재난, 안전사고, 감염병,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,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 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- 1.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2.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
- 3.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
- 4.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관한 사항
- 5.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 · 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6.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7조의2(안전관리)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재난, 안전사고, 감염병,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 부터 학생,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・ 시행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 1.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.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.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.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관한 사항 5.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 ・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- 6.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 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